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44회 임시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장덕준 의원 외 5명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장덕준 의원 외 5명
- 제안일 : 2020. 10. 20.
- 회부일 : 2020. 10. 20. (의안번호 : 20 - 153)

## 2. 제안이유

-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,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고 있는 내용 삭제(안 제10조)
- 적용 규칙의 명칭 정비(안 제12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덕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,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 
안 제10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
- 안 제12조에 적용 규칙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  
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인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의 취지를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